

예 산 안 총 칙

제 1 조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	세 입 · 세 출 예 산 총 액	일 시 차 입 한 도 액
총 계			221,082,996	6,632,490
1. 일 반 회 계			204,534,362	6,136,031
2. 특 별 회 계			16,548,634	496,459
기 타	(1) 상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1,535,270	46,058
	(2) 하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618,617	18,558
	(3) 수 질 개 선	특 별 회 계	4,718,254	141,548
	(4) 의 료 급 여	특 별 회 계	163,951	4,919
	(5)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	특 별 회 계	2,104,990	63,150
	(6) 주 택 사 업	특 별 회 계	3,080,517	92,416
	(7) 발 전 소 주 변 지 원 사 업	특 별 회 계	344,039	10,321
	(8) 괴 산 청 결 고 추 상 설 직 판 장	특 별 회 계	573,444	17,203
	(9) 농 공 단 지 관 리	특 별 회 계	233,964	7,019
	(10) 주 차 장 운 영	특 별 회 계	194,440	5,833
	(11) 미 집 행 도 시 계 획 시 설 보 상	특 별 회 계	2,747,702	82,431
	(12) 기 반 시 설	특 별 회 계	233,446	7,00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 3 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4 조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091,4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